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6
------------	-----

제출년월일 : 1999. 7.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1. 제안이유

- 주차장법의 개정('99. 2. 8일, 법률 제5902호)으로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폐지하고, 내용상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주차장법 개정으로 민영주차장의 신고의무규정 및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당해 주차장 관리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 삭제
(조례 제18조 및 제6조제2항)
- 주차장법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제공 신고에 관한 규정 삭제
(조례 제15조)
- 경차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승용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해 주는 규정을 경형자동차(800cc이하)로 확대시행 개정(조례 제6조제4항제2호)
-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하여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자 중 국세청장,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성실납세증 표지를 받은자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규정 신설(조례“안” 제6조제4항제4호)
- 인근 민영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조례“안” 별표1 제5호)

3. 근거 법규

- 주차장법 제12조, 제15조, 제19조의3
-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영주차장”이라함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경형승용자동차”를 “경형 자동차”로 하며, 동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 시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수상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감면한다.

제10조 제1항제5호중 “신고번호”를 삭제한다.

제14조 제2항중 “공용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제1항중 “노외주차장”을 “민영주차장”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0조 제목중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하고, 본문중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하며, 동조제1항중 “시설물은”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를 각각 “주차장은”과 “주차대수”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장애인 전용주차장소”와 “장애인 표시”를 각각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장애인 전용표시”로 한다.

별표1 공영주차장요금표 하단부 비고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청장은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주차요금을 50페센트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별표2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의 가로규격 “90cm”를 “90~150cm”로 하고, 세로 규격 “80cm”를 “80~130cm”로 하며, 기등의 높이 “1.0~2.1m”를 기등의 높이 “1.0~2.1m”로 하고, 5의 괄호중 “신고번호”를 삭제하며, 비고1. 주차장별 이용안내 표지판 재료 및 색채기준의 구분, 재료, 색채란 중 “민영주차장”란을 삭제한다.

별표4 주차장설치규모별보조범위의 주차장의 규모, 보조범위란 중 주차장의 규모란의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명령시”란을 삭제한다.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6】

과태료처분기준

위반행위별	적용법규	과태료금액	
1.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 포함)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이용을 거절한자.	법 제30조제2항제2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2. 법 제19조의7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도인정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자.	법 제30조제2항제4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 법 제19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자.	법 제30조제2항제5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4.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자.	법 제30조제2항제6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 과태료 처분후에도 계속 위반행위를 할 시는 90일이내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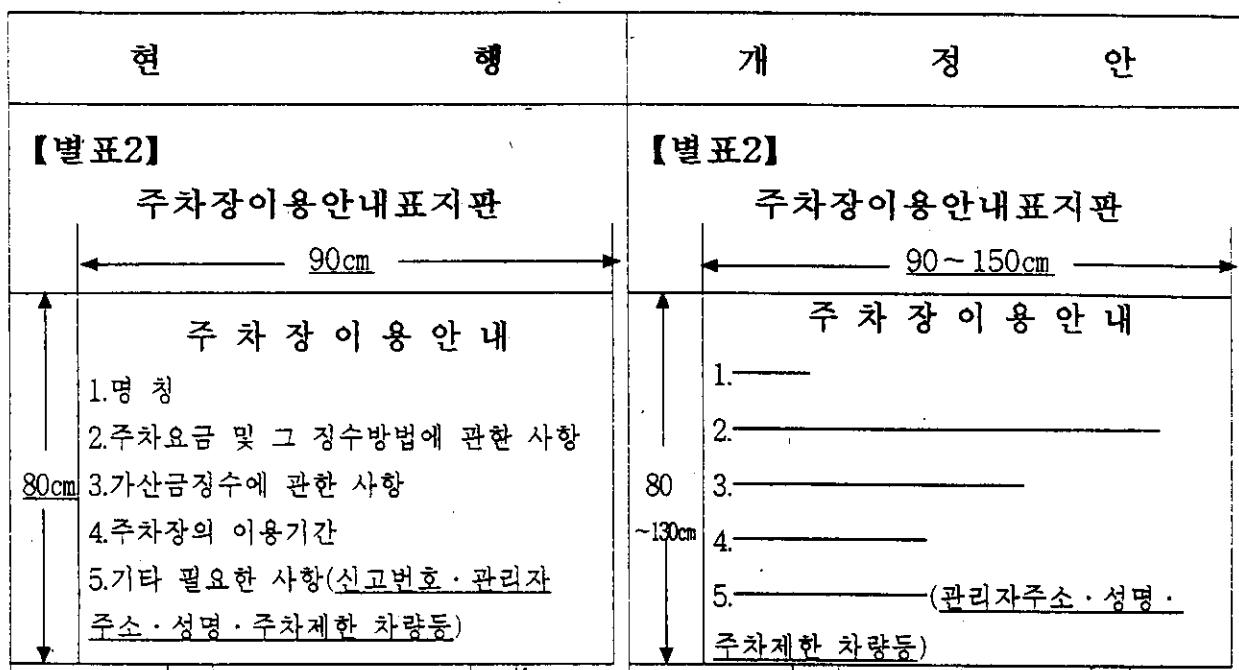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생략)</p> <p>1.(생략)</p> <p>2. “민영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12조제2항의 구청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p>	<p>제2조(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_____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p>
<p>제6조 (주차요금 등) ① (생략)</p> <p>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p> <p>③ (생략)</p> <p>④ (생략)</p> <p>1. (생략)</p> <p>2.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p> <p>3. (생략)</p> <p>(신설)</p>	<p>제6조 (주차요금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삭제)</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_____</p> <p>_____ 경형자동차</p> <p>_____.</p> <p>3. (현행과 같음)</p> <p>4. 모별납세자로 표창을 받은자로서 국세청장, 시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수상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감면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 (주차장의 표지등) ①(생략) 1.~4. (생략) 5.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관리자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등)</p>	<p>제10조 (주차장의 표지등) ①(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등)</p>
<p>제14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등)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때에는 시설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 별표3의 <u>공용주차장 무상사용증</u>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14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등) ①(현행과 같음) ②</p> <p style="text-align: center;"><u>공영주차장</u></p>
<p>제15조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제공) ①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②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일반이용제공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부설주차장일반이용에의 제공신고서 및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경우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정한 관리비(주차요금)를 징수할 수 있다.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부설주차장의 그 규모와 일반의 이용시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전에 일반의 이용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p>	<p>제15조 (삭제)</p>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 (보조 또는 용자)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6제6항의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주차장설치비용(토지매입비 제외 이하 같다) 일부를 보조 또는 용자(이하 "보조"라 한다)할 수 있다.</p>	<p>제16조 (보조 또는 용자) ① —————— — 민영주차장 —————— ————— ————— ————— —————</p>
<p>제18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p>	<p>제18조 (삭제)</p>
<p>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허가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어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노외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제20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p> <p>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2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 제6조제1항 별표1의 비고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p>	<p>제2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① —————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 주차장은 ————— ————— 주차대수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 ② —————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p>

현 행	개 정 안																																								
1. (생략) 2. (생략) ③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과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3.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크기는 1면당 너비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장애인 전용주차장소에는 별표 5의 장애자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현재와 같음) 2. (현재와 같음) ③장애인 전용주차구역 _____ 1. _____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_____ 2. _____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_____ 3.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_____ ④장애인 전용주차구역 _____ — 장애인 전용표시 _____																																								
【별표1】 공영주차장요금표 (단위 : 1구획당, 원)	【별표1】 공영주차장요금표 (단위 : 1구획당,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노상 및 노외</th> <th colspan="3">노 외</th> </tr> <tr> <th>기본 최장분야내 (1구획당)</th> <th>기본초과 폐30분 단위 10분이내 20분이내 30분이내</th> <th>1 일 주 차</th> <th colspan="3">월정기주차 주간 야간</th> </tr> </thead> <tbody> <tr> <td>1금지</td> <td>500</td> <td>200</td> <td>400</td> <td>500</td> <td>10,000</td> <td>80,000 60,000</td> </tr> </tbody> </table>	구분	노상 및 노외			노 외			기본 최장분야내 (1구획당)	기본초과 폐30분 단위 10분이내 20분이내 30분이내	1 일 주 차	월정기주차 주간 야간			1금지	500	200	400	500	10,000	80,000 60,000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노상 및 노외</th> <th colspan="3">노 외</th> </tr> <tr> <th>기본 최장분야내 (1구획당)</th> <th>기본초과 폐30분 단위 10분이내 20분이내 30분이내</th> <th>1 일 주 차</th> <th colspan="3">월정기주차 주간 야간</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노상 및 노외			노 외			기본 최장분야내 (1구획당)	기본초과 폐30분 단위 10분이내 20분이내 30분이내	1 일 주 차	월정기주차 주간 야간			—	—	—	—	—	—	—
구분		노상 및 노외			노 외																																				
	기본 최장분야내 (1구획당)	기본초과 폐30분 단위 10분이내 20분이내 30분이내	1 일 주 차	월정기주차 주간 야간																																					
1금지	500	200	400	500	10,000	80,000 60,000																																			
구분	노상 및 노외			노 외																																					
	기본 최장분야내 (1구획당)	기본초과 폐30분 단위 10분이내 20분이내 30분이내	1 일 주 차	월정기주차 주간 야간																																					
—	—	—	—	—	—	—																																			
비 고 1.~4. (생략) (신설)	비 고 1.~4. (현재와 같음) 5. 구청장은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주차요금을 50페센트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비 고

1. 주차장별 이용안내 표지판 및 색채 기준

구 分	재 료	색 채	
		바 탕	글 씨
공영주차장	알루미늄판	녹 색	흰색고딕
민영주차장	"	청 색	"

2. (생 략)

- 가. (생 략)
- 나. (생 략)

비 고

1. 주차장별 이용안내 표지판 및 색채 기준

구 分	재 료	색 채	
		바 탕	글 씨
"	"	"	"
(작)			(제)

2. (현행과 같음)

- 가. (현행과 같음)
- 나.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4】

주차장 설치 규모별 보조 범위

주 차 장 의 규 모	보 조 범 위	
	개인부지인 경 우	국 · 공유지 점용의 경우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	설치비용의 3분의1이내	설치비용의 5분의1이내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명령시	설치비용의 3분의1이내	설치비용의 5분의1이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1이내	설치비용의 5분의1이내

【별표6】

과태료 처분 기준

위 반 행 위 별	적용법규	과태료금 액	비고
1.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의주차장 을 설치한자	법 제30조 제1항제1호	1차 70만원 2차 100만원	
2. 법 제12조제5항(법 제19조의3제3 항에서 준용되는 경우포함)의 규 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을 일반이용 에 제공한자	법 제30조 제1항제2호	1차 70만원 2차 100만원	
3. 법 제15조제2항(법 제19조의3제3 항에서 준용되는 경우포함)의 규 정에 의한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 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자	법 제30조 제1항제3호	1차 70만원 2차 100만원	
4. 법 제16조(법 제19조의3제3항에 서 준용되는 경우포함)의 규정에 의한 시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의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증지 또는 폐지한자	법 제30조 제2항제1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5.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제3 항에서 준용되는 경우포함)의 규 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 반 이용을 거절한 자	법 제30조 제2항제2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6. 법 제18조제1항(법 제19조의3제3 항에서 준용되는 경우포함)의 규 정에 위반하여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자	법 제30조 제2항제3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7. 법 제1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위 반하여 안전도인정표지를 부착하 지 아니한자	법 제30조 제2항제4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8. 법 제19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 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자	법 제30조 제2항제5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9.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자	법 제30조 제2항제6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 과태료 처분후에도 계속 행위를 할 시는 90일이내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개 정 안

【별표4】

주차장 설치 규모별 보조 범위

주 차 장 의 규 모	보 조 범 위	
	개인부지인 경 우	국 · 공유지 점용의 경우
(삭)		
(제)		

【별표6】

과태료 처분 기준

위 반 행 위 별	적용법규	과태료금 액	비고
(삭)			(제)
	법 제19조의3제2 항	— —	
		— —	
		— —	
(삭)			(제)
		— —	
		— —	
		— —	
		— —	
		— —	
		— —	
		— —	
		— —	

※ ————— 위 반 행 위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앞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2">부설주차장 일반예의 제공신고서 및 신고필증</td> <td style="text-align: right;">처리기한 7일</td> </tr> <tr> <td rowspan="3" style="vertical-align: top; width: 10%;">신고인</td> <td>① 성명</td> <td>② 주민등록번호</td> </tr> <tr> <td>③ 주소</td> <td>④ 전화번호</td> </tr> <tr> <td>⑤ 명칭</td> <td>⑥ 주차장의 형태</td> </tr> <tr> <td>⑦ 위치</td> <td>⑧ 규모</td> <td style="text-align: right;">대</td> </tr> <tr> <td>⑨ 준공예정일</td> <td>⑩ 이용예정일</td> <td></td> </tr> <tr> <td colspan="3">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1항 및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수수료 없음 </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년 월 일 신고인 (인)</td> </tr> <tr> <td colspan="3"> 첨부서류 1. 사업지안의 주차장 배치도 2. 인근 300미터 이내의 도로의 교통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 (축척 1천200분의1 이상일 것) 3. 토지의 자본 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토지조사(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를 기재한 건물 조서를 포함한다.) 4.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5.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이 경우 노의를 부설로 본다.) </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td> </tr> <tr> <td colspan="3"> 신고 제호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필증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1항 및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인) </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뒷면)</td> </tr> <tr> <td colspan="3"> ※ 기재상 주의사항 1. ①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③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3 ④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4 ⑥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한다. 5. ⑧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한다. </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td> </tr> <tr> <td colspan="3">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신고(신청)인</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처리기관(구청장)</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신고서작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접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접수대장등재</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검토(대장확인)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현장확인방해</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결재</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신고필증작성</td> <td></td> </tr> </tbody> </table> </td> </tr> </table>		부설주차장 일반예의 제공신고서 및 신고필증		처리기한 7일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명칭	⑥ 주차장의 형태	⑦ 위치	⑧ 규모	대	⑨ 준공예정일	⑩ 이용예정일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1항 및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고인 (인)			첨부서류 1. 사업지안의 주차장 배치도 2. 인근 300미터 이내의 도로의 교통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 (축척 1천200분의1 이상일 것) 3. 토지의 자본 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토지조사(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를 기재한 건물 조서를 포함한다.) 4.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5.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이 경우 노의를 부설로 본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신고 제호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필증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1항 및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인)			(뒷면)			※ 기재상 주의사항 1. ①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③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3 ④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4 ⑥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한다. 5. ⑧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한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신고(신청)인</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처리기관(구청장)</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신고서작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접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접수대장등재</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검토(대장확인)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현장확인방해</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결재</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신고필증작성</td> <td></td> </tr> </tbody> </table>			신고(신청)인	처리기관(구청장)	비 고	신고서작성	접수	접수대장등재		검토(대장확인)등	현장확인방해		결재			신고필증작성	
부설주차장 일반예의 제공신고서 및 신고필증		처리기한 7일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명칭	⑥ 주차장의 형태																																																									
⑦ 위치	⑧ 규모	대																																																									
⑨ 준공예정일	⑩ 이용예정일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1항 및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고인 (인)																																																											
첨부서류 1. 사업지안의 주차장 배치도 2. 인근 300미터 이내의 도로의 교통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 (축척 1천200분의1 이상일 것) 3. 토지의 자본 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토지조사(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를 기재한 건물 조서를 포함한다.) 4.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5.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이 경우 노의를 부설로 본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신고 제호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필증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1항 및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인)																																																											
(뒷면)																																																											
※ 기재상 주의사항 1. ①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③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3 ④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4 ⑥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한다. 5. ⑧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한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신고(신청)인</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처리기관(구청장)</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신고서작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접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접수대장등재</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검토(대장확인)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현장확인방해</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결재</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신고필증작성</td> <td></td> </tr> </tbody> </table>			신고(신청)인	처리기관(구청장)	비 고	신고서작성	접수	접수대장등재		검토(대장확인)등	현장확인방해		결재			신고필증작성																																											
신고(신청)인	처리기관(구청장)	비 고																																																									
신고서작성	접수	접수대장등재																																																									
	검토(대장확인)등	현장확인방해																																																									
	결재																																																										
	신고필증작성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① 노외주차장을 특별시장 · 광역시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개정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 · 광역시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의 구조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12.27, 91.12.14, 95.1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노외주차장설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된 계획서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주차장설치에 관한 기본방향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구조 · 설비기준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5.12.2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설치를 완료한자는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당해 주차장이 그 설치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받기 전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95.12.29> [전문개정 90.4.7]

제15조 (관리방법)

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83.12.31, 91.12.14, 95.12.29>

②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 ·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4.7, 90.12.27, 91.12.14, 95.12.29>

③ 삭제 <90.4.7>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83.12.31, 90.4.7, 91.12.14>

⑤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신고된 관리규정이 다른 유사한 노외주차장의 관리규정과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거나 기타 개선을 요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규정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83.12.31, 90.4.7, 91.12.14>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95.12.29>

②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과 당해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 일반의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2조제5항 · 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제1항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1.12.14, 95.12.29> [전문개정 90.4.7]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8조 (노외주차장의 표지)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종류 · 서식 기타 표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부설주차장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 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립지역안에서 건축물 ·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86)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99. 7. 12.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 : '99. 7. 15.
- 라. 위원회 심사 : '99. 7. 24.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가. 제안이유

-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폐지하고 내용상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주차장법 개정으로 민영주차장의 신고의무규정 및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당해 주차장 관리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 삭제 (조례 제18조)
- 주차장법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제공 신고에 관한 규정 삭제(조례 제15조)
- 경차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해 주는 규정을 경형 자동차(800cc이하)로 확대시행 개정(조례 제6조 제4항 2호)
- 성실 납세 풍토조성을 위하여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중 국세 청장,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성실탑세증 표지를 받은 자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규정 신설 (조례 “안” 제6조 제4항 4호)
- 인근 민영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조례 “안” 별표1 제5호)

다.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12조, 제15조, 제19조의3
-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4.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 제6조4항4호는 신설조항으로서 모범 납세자의 성실 납세증표지의 적용과 해당기관의 성실납세증 남발로 감면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볼 때 공용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 개정안 별표1 비고 5호은 신설항목으로서 주차요금 50% 범위내 조정부분은 민영주차장과 탄력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좋은 점은 있으나 규정을 수시로 조정할 경우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켜 결국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신을 초래할 것임.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가결 내용

수 정 전	수 정 후
<p>제6조(주차요금 등)④(현행과 같음)</p> <p>1.~3.(현행과 같음)</p> <p>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자로서 국세청장, 시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 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 한 차량에 대하여 수상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감면한다.</p> <p>【별표1】</p> <p>비고</p> <p>1.~ 4.(현행과 같음)</p> <p>5. 구청장은 <u>외근주차장과 협정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주차요금을 5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u></p>	<p>제6조(주차요금 등)④(현행과 같음)</p> <p>1.~3.(현행과 같음)</p> <p>4. (삭제)</p> <p>【별표1】</p> <p>비고</p> <p>1.~ 4.(현행과 같음)</p> <p>5. 구청장은 <u>(삭제)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주차요금을 5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u></p>